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21
----------	-----

2023년 5월 2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 2. 이병도 의원 등 17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2. 9.

다. 상정 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3년 5월 2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외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구금상태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립하고자 제안되었음.

### 2 인용법령 개정(안 제1조)

-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의원의 의정활동비<sup>1)</sup>와 월정수당<sup>2)</sup>, 여비<sup>3)</sup> 지급 근거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오류를 개정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6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개정(2022.1.)되었으나, 이를 조례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는 법령 개정 사항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임.

1)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및 조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서울시의원, 월 150만원, 2023년 기준)

2) 월정수당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월정수당(서울시의원, 410만원, 2023년 기준)

3) 여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 및 조례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표-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

**3 출석정지 징계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안 제6조)**

- 안 제6조는 서울시의원이 구금상태뿐만 아니라 출석정지<sup>4)</sup>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 제한하고(제2항), 법원의 판결로 무죄와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 지급(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 -----

4) 지방의회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며,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처분을 함(「지방자치법」 제98조~제100조).

현 행	개 정 안
<p>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u>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 ----- . <u>&lt;단서 삭제&gt;</u></p> <p>② <u>의원이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③ <u>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u></p>

○ 이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권고(2022.12.22.)에 따른 조치임.

- 국민권익위가 최근 8년간(2014.7.~2022.6.)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실제 출석이 정지된 97명에게 총 2억 7,230만원(1명당 평균 280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되었음.

- 같은 기간 비위행위로 구속된 38명에게 총 6억 5,228만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바 있음.
- 서울시의회의 경우, 구속된 의원의 의정비 지급 사례가 1건(418일, 6,027만원) 있었으며, 출석정지 징계로 의정비 등이 지급된 사례는 없었음.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1995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경우에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2015.1.)하여 시행 중임.
- 따라서 구금상태뿐만 아니라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에도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로 무죄와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정안은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켜 주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의 권고 사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국민권익위는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경고·사과 등의 징계 시에도 국회<sup>5)</sup>와 같이 의정비를 50% 감액하고, 구속기간에는 의정비를 전액

미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권한대행 기간 연봉 월액의 40%, 3개월 경과시 20% 지급)으로 감액할 것을 권고한 바, 의정비 제한 대상과 그 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임.

- 그 밖에 현재 17개 광역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등의 제한 현황을 보면, 구금상태의 경우 모든 의회에서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의 지급을 제한 (월정수당은 대구 한 곳)하고 있었으나, 출석정지 시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표-3> 광역 지방의회별 의정활동비 등의 제한 현황(2023.4월 기준)

지자체명	제한대상	구금상태	출석정지
서울특별시	의정활동비, 여비	적용	미적용
부산광역시	의정활동비, 여비		
인천광역시	의정활동비, 여비		
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광주광역시	의정활동비, 여비		
대전광역시	의정활동비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활동비, 여비		
울산광역시	의정활동비		
경기도	의정활동비		
강원도	의정활동비, 여비		
충청북도	의정활동비, 여비		
충청남도	의정활동비, 여비		
전라북도	의정활동비		
전라남도	의정활동비		
경상북도	의정활동비		
경상남도	의정활동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여비		

**4 종합 의견**

- 개정안과 같이 구금상태 이외에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한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조치임.
- 다만, 국민권익위의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권고 기준 대비 개정안의 제재 수준이 미흡하므로 서울시의회 위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제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징계는 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의 사유와 절차·효력 등을 법률(「지방자치법」)로 직접 규정하고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징계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의 사유와 절차·효력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석정지 징계 근거를 관계 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 출석정지 징계 근거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로 수정함(안 제6조제2항).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별첨 참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 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21 관련
----------	-----------

제안년월일 : 2023년 5월 2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 1. 수정이유

- 징계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의 사유와 절차·효력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석정지 징계 근거를 관계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 출석정지 징계 근거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로 수정함(안 제6조제2항).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원안과 같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로 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